미륵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정 2007.10.01.
개정 2021.02.04.
개정 2023.01.31.
개정 2023.12.14.
개정 2024. 7.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미륵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유아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유치원은 미륵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명한다. (이하 "본원"이라 함)

제3조 (위치)

본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길 243에 둔다.

제2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원의 수업연한은 1~3년으로 한다.

제5조 (학기)

본 원의 교육과정 학기는 년 2학기로 한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① 국경일

② 토요휴업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③ 개교기념일

④ 여름 · 겨울방학

⑤ 학년말 방학

⑥ 미륵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⑦ 임시휴업일 : 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유아정원

제7조 (학급편제)

본원의 학급 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유아정원)

본원의 유아 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수용지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9조 (교육과정)

본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10조 (교육내용)

① 본원은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과 본원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②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 돌봄활동이 적절히 어우러진 놀이와 활동으로 운영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제11조 (수업일수)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하여 운영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수업일수의 10분의 1
2. 유아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제12조 (수업시간)

본원은 아래 1호, 2호의 수업운영을 한다.

① 교육과정 : 1일 4~5시간 수업(단, 적응기, 정상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방과후 과정 :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7~8시간의 수업

제13조 (현장체험학습)

①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할 수 있다.

② 현장체험학습은 테마중심체험학습, 활동중심체험학습, 숲체험 등으로 추진한다.

③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30일까지 수업으로 인정한다.

⑤ 이외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 (수업운영방법)

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반·방과후반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② 교사는 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활동은 놀이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흥미영역과 교재, 교구는 계절, 주제, 행사 및 유아의 요구 등에 따라 적절히 재구성한다.

④ 교육활동은 발표, 토의, 관찰, 실험, 조사, 견학 등 유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들을 활용한다.

⑤ 교재, 교구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수매체를 활용하되, 가능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주는 실물자료를 사용한다.

⑥ 교사는 확산적 질문을 많이 하여 유아의 호기심과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한다.

제15조 (유아평가)

① 유아평가는 유아의 발달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되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에 역점을 둔다.

② 평가 결과는 유아 개개인의 성장발달을 돕고,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제16조 (생활기록부 작성・보관)

① 법 제14조에 의거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②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한다.

제6장 입학 재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및 졸업 학적 처리 기준

제17조 (입학자격)

①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로 한다.

② 초등학교 입학 유예자도 포함하며,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2세(1~2월생)도 포함한다.

제18조 (입학시기)

입학자격 해당자는 3월 초에 입학한다. 정원이 미달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중도에 입학할 수 있다.

제19조 (입학결정)

당해 학년도 유아모집 선발기준에 의거 유아를 선발하며, 원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제20조 (재학)

당해 본원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로 한다.

제21조 (재입학)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뒤 다시 우리 유치원에 들어온 유아로 한다.(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불가)

제22조 (편입학)

휴학을 희망하는 원아는 그 사유에 대한 서류를 본원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전입학)

① 다른 유치원에서 우리 유치원으로 재학생이 된 유아로 한다.

② 타 유치원에서 전입학을 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제24조 (전출)

다른 유치원으로 전입학 하기 위해 전입 유치원으로 학적을 옮기는 유아로 한다.

제25조 (휴학)

① 원장의 허가 하에 질명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하는 유아로 한다.(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불가)

② 본원에서 재학하던 중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유아는 학년말 말까지 휴학할 수 있으며, 유치원 정원으로 포함한다.

③ 휴학 기간에는 학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아 학비 미지급(가정양육수당 미지급) 대상이며,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해당되며, '정원 외 학적 관리' 할 수 있음)

제27조 (복학) 휴학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유치원에 들어오는 유아로 한다.

제28조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유아(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것으로 한다.(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해당)

제29조 (자퇴) 전출, 휴학 이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우리 유치원에서의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중단하는 유아로 한다.(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불가)

제30조 (퇴학) 유치원 규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이 박탈된 유아로 한다.(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불가)

①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2.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제31조 (수료)

① 3,4세 유아 중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유아로 한다.

②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 규정에 의해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제32조 (졸업)

① 5세 교육과정을 마치는 유아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 규정에 의해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제7장 생활지도

제33조 (목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아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한다.

제34조 (생활지도의 범위)

① 생활지도는 교원이 교육활동 및 유치원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로, 각 호의 내용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의 생활지도 범위로 한다.

②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 사용
   가.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나.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다. 유아들 간 서로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물건
   라. 유아들 간 서로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물건
   마. 교육 활동에 방해되는 기타 물품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제35조 (주의 및 훈육)

①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교원은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 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제지할 수 있다.

④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제36조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다른 유아나 교사에게 폭력, 폭언 등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유아를 분리하여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유아가 위험한 행동을 초래하여 안전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제지가 어려울 때는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교육부 고시 제2023-30호에 따른다.

제8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제38조 (목적)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확보 및 공식적인 의견 교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하 생략

제39조 (구성)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미륵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병설유치원)

제40조 (기능)

①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⑤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⑦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⑩ 그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자문) 요청한 사항

제9장 시상

제41조 (시상)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0장 기타의 비용

제42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무상교육은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되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 (기타의 비용)

원장은 다음과 같이 각종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무상교육 3년을 초과한 기간의 유아교육비

② 그 밖에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후 징수할 수 있다.

제11장 규칙개정절차

제44조 (규칙개정)

본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교직원 회의에서 논의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한 날(2024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유치원장이 정한다.